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 공급망 강화·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외투 유치활동 추진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 4배 증액 등 지원제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제114회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 : 산업부 장관)」를 서면 개최하여 '24년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시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고충처리 실적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간활동을 보고받았다.

산업부는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통해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① 전략적 유치활동 추진, ②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강화, ③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공급망 강화·첨단기술 확보를 위하여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고위급 소통 또는 소규모·밀착형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한, 첨단산업 핵심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24년 현금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23년 500억원 → '24년 2,000억원)하고,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설하여 글로벌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한다.

한편,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23년 제도개선 18건 등 총 406건*의 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하였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처리하기 위해 '99년 도입되었으며,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이다.

* 제도개선 18건, 행정해석·절차 지원 277건, 제도 컨설팅 지원 111건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적극적인 고충처리 활동 등을 토대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4070)
		담당자	서기관	박수정 (044-203-4071)
		담당자	사무관	이상현 (044-203-4073)

연번	안건 및 조치결과	소관부처
1	<p>신기술 추가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절차 개선</p> <p>적합성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되는 경우에 신규 신청 대신 적합성평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요청 →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변경절차(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개정을 통해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될 경우 신규로 신청하지 않고, 변경절차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23.4월)</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2	<p>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p> <p>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OEM)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OEM 생산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23.2월)</p>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3	<p>외환거래 신고제도 개선</p> <p>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엄격한 규제 및 신고사항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개선 요청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해외송금 거래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금액기준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금액기준을 연간 5만불 → 10만불로 확대하고,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누계 3천만불 → 5천만불로 상향하였으며, 은행 사전신고 유형들을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23.7월)</p>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4	<p>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에 의한 투자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p> <p>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에 의한 투자신고 과정에서 제출서류 작성에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외국인투자 신고 시, 간소화된 “투자개요서” 양식을 마련하여 서류 작성 부담 완화('23.8월)</p>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5	<p>증설투자 인정요건에 공장시설 순증조건 완화 요청</p> <p>현행 현금지원제도상 증설투자는 공장시설 면적, 고용 등이 순증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기존공장 내 시설 면적의 증가 없는 수직증축 또는 설비추가 등은 해당되지 않아 시설면적 증가 없는 시설투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부가가치 및 투자효과가 있다면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 요청 →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개정을 통해 현금지원 대상 증설투자 요건 완화('23.4월)</p>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연번	안건 및 조치결과	소관부처
6	<p>CSAP 보안인증제도의 공공기관 보안등급 세분화 요청</p> <p>CSAP 보안인증제도로 인해 공공기관 납품 사업기회에 참여하기 어려워, 보안적합성 인증의무 대상범위를 국가안보, 외교 등에 직결된 기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청</p> <p>→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등의 시스템을 3등급(상중하)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인증기준을 적용하는 CSAP 보안인증 등급제 개선('23.1월)</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p>
7	<p>증설투자에 대한 세제, 입지,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필요</p> <p>첨단소재 산업에 대한 생산시설 투자 관련 투자세액공제 확대 요청</p> <p>→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항」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가 도입('23.4월)</p>	<p>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p>
8	<p>적합성평가정보의 표시방법 중 제조시기 표시사항 개선</p> <p>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에서 적합성평가정보의 표시 위치 조정을 통해 업체의 행정비용 부담완화 요청</p> <p>→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개정을 통해 제조시기 표시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23.3월)</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p>
9	<p>금융분야 클라우드 관련 망분리 규제의 조속한 개선 요청</p> <p>비중요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완화 요청</p> <p>→ 「전자금융업법 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내부업무용 단말(또는 내부망)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23.9월)</p>	<p>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p>
10	<p>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중증질환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p> <p>국내 의약품의 낮은 보험 등재가 및 다른 나라에서의 한국 보험 등재가의 참조로 인한 신약의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만 제한된 위험 분담제의 확대 적용을 건의</p> <p>→ '23.11월부터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사용하는 GSK 누칼라주가 환급형 위험 분담제로 확대 적용</p>	<p>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p>

연번	안건 및 조치결과	소관부처
11	<p>국제거래명세서의 간소화 요청</p> <p>現 세법에 의한 국제거래명세서는 국외특수관계자별로 최소 3페이지 이상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다수의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국제거래명세서의 작성 및 번역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행정 서식을 간소화해줄 것을 건의</p> <p>→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갑)]」 개정을 통해 국제거래명세서 서식을 가로화하고 작성내용을 간소화하여 외투기업의 작성 부담을 완화(‘23.3월)</p>	<p>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p>
12	<p>공유수면 점용·사용 단일 허가기관 선정 요청</p> <p>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점용·사용신청 검토를 위해, 해저케이블 및 발전단지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검토하는 단일 허가기관 선정 필요</p> <p>→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4조(허가 등의 통보·협의 등)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공유수면관리청에 허가 및 승인을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허가 또는 협의·승인의 방향 등을 미리 협의하도록 개선(‘23.12월)</p>	<p>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p>
13	<p>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요청</p> <p>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나, 상당수 외은이 소비자금융업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원화예수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본지점 차입금을 조달로 인정하나 한도가 있어 여전히 원화대출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개선 요청</p> <p>→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개정을 통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을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외은지점의 장기차입금 전체와 본지점 단기차입금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23.4월)</p>	<p>금융위원회 은행과</p>
14	<p>전기자동차 인증 절차 및 제출서류 명확화 요청</p> <p>전기자동차 관련 인증 절차 및 제출서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전기자동차 제작사는 인증기관의 불명확한 제출서류 보완요청으로 인해 인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전기자동차의 인증 절차에 대한 제출자료 등 명확한 규정 정비 요청</p> <p>→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의2호 서식」 개정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품 등 제출서류를 명확화(‘23.7월)</p>	<p>환경부 교통환경과</p>

연번	안건 및 조치결과	소관부처
15	<p>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 명확화 및 동의조건 개선 요청</p> <p>'22.7월 공유수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신설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몇몇 허가기관으로부터 이해관계자(어민조합) 전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요구가 있어, 모호한 이해관계자 정의에 대한 개선 요청</p> <p>→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23.12.4)」 제14조의2(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이 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개정 후 '가능성'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던 것을 '이견 해소 정도'로 판단하는 등 기준 완화('23.12월)</p>	<p>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p>
16	<p>탄소배출권 배출량기준 개선 요청</p> <p>신생 기업에게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부담 적용기준 완화 요청</p> <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5조(신청에 의한 추가 할당 사유) 제1항 제1호 마목 개정을 통해 배출량이 기존 2배에서 1.5배 증가한 경우로 변경('23.1월)</p>	<p>환경부 기후경제과</p>
17	<p>관련디자인 출원기간 연장 요청</p> <p>관련디자인*의 출원가능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 존재</p> <p>* 관련디자인제도 :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에 변경을 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기본디자인의 침해, 모방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p> <p>→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관련디자인의 출원가능기간을, 기본디자인 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23.6월)</p>	<p>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p>
18	<p>소아용 저함량 생물의약품 함량산식 예외 적용 요청</p> <p>「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2항 나목 관련, 소아용 저함량 생물의약품에 대해서는 함량산식을 예외적용하여 소아 접근성 확대를 요청</p> <p>→ 소아용 제품 개발의 어려움과 소아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저함량 약제라 하더라도 소아, 성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대부분이므로 소아용으로 간주하기가 어려움. 다만, 중증 만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경우는 예외를 적용</p> <p>* '23.2월 중증만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애브비 린버크 서방정을 만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에 급여 적용 * '23.4월 중증만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사노피 듀피펜트를 만6세 이상 소아청소년까지 급여 확대</p>	<p>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p>